

청년 복지제도에서 연령주의의 한계와 연령통합적 대안 모색

목차

- I. 사회복지제도와 연령 기준
- II. 청년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
- III. 정책제언

사회복지제도에서 연령 기준 문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

- ▶ 사회복지제도에서 연령은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데 핵심 요인이지만 획일적 기준은 오히려 다양한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가진 모든 연령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들도 연령에 기반하고 있기에 현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 출산, 고용 등과 같은 생애 과정의 이질성이 증가하였기에 과거에 통용된 연령 기준은 맞지 않음

사회인식과 현실을 반영한 청년 연령 기준 재설정 필요

- ▶ 사회에서 인식하는 청년 연령 상한 기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관련 법률, 조례, 제도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령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경직성과 획일성을 제거하여 연령과 상관없이 기회가 열려있는 연령통합적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 교육, 훈련, 고용, 사회활동 등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연령통합적 관점에 따라 경기도의 청년 관련 조례들과 사회복지제도의 연령 기준을 확대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사회복지제도의 정책
대상은 욕구보다는
연령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음

사회복지제도에서 정책 대상은 욕구(needs)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사회복지의 인간 욕구불만 상태를 해결하거나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회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개인 및 집단의 복지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인간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정책 대상은 연령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

-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동안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전통적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것이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유럽연합(EU) 사회보장위원회 사회정책 분석틀에서는 연령을 0~17세, 18~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선별하고 있어 욕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에 다소 한계가 존재함
 - 연령을 기준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가진 연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 연령은 실제로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특성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나 연령에 따른 특성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단순히 연령에 의존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연령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는 특정한 위험군이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연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 또한, 연령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단순히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I. 사회복지제도와 연령 기준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들 역시
육구 중심보다는
연령에 기반하고 있음

- ▶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정책 대상을 논의할 때에는 단순히 연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는 연령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음

- ▶ 각 정부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의 청년 연령 기준은 각각 다름
 -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유사한 정책이라도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고용,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독자적인 분류 체계가 없어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정도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관련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있어 청년의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¹⁾
- ▶ 청년 정책은 법적 근거나 집행 체계가 모호함²⁾
 - 청년은 성인의 연장선이거나 청소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아 여성, 노인, 아동 등과 같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음
 - 최근까지 청년 관련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 정책을 전담하거나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처가 없었음
 - 청년 정책은 정부의 기본계획이나 종합대책 중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각각의 특정 부처에서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구조임

청년 연령 기준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생애 단계로서의 접근이 필요함

- ▶ 과거에는 결혼, 출산, 고용 등과 같은 생애 과정의 이행 시점에서 동질성이 강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질성이 더욱 커지는 등 청년의 생애 과정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초혼 연령은 2000년에서 202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세 이상 29세의 청년 고용률은 전체 연령 대비 낮은 수준임

1) 서울 도봉구는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하였고, 전남 고흥, 전북 장수, 경북 봉화, 충북 괴산 등은 청년 연령 기준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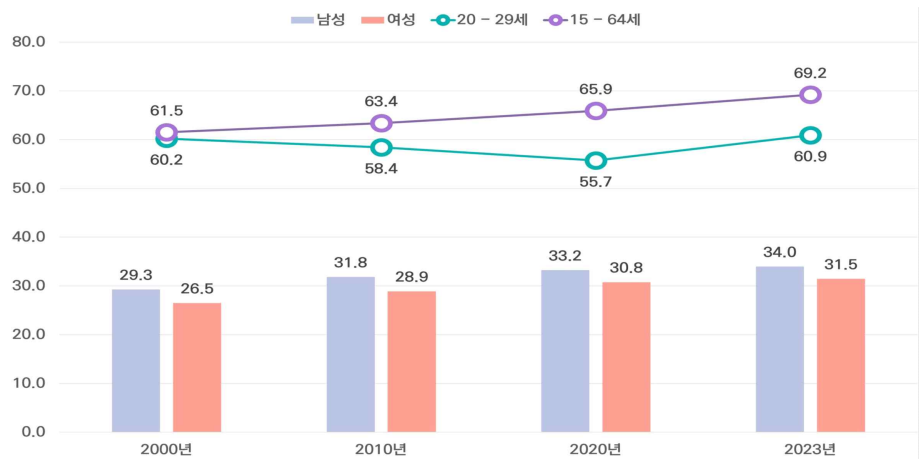
2) 김기현(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월호, 54-68.

I. 사회복지제도와 연령 기준

청년들의 초혼 연령은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 초혼 연령 및 청년 고용률

(단위: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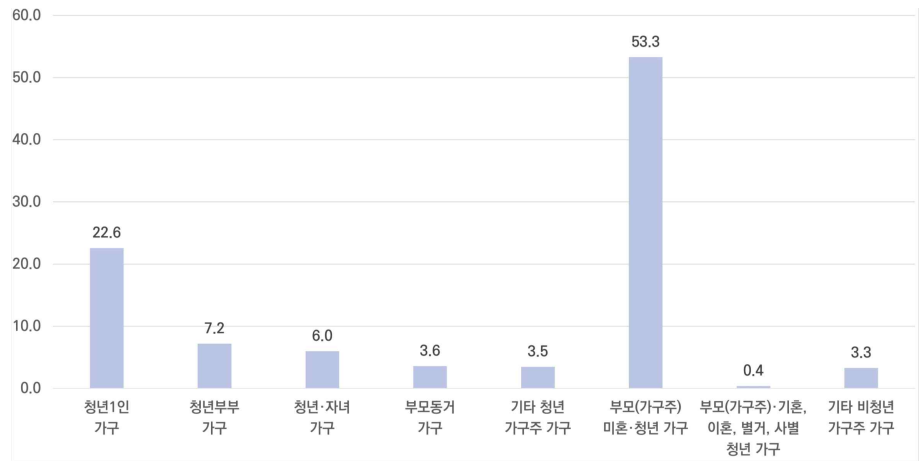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s://kosis.kr>),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와 거주(53.3%)하거나 1인 가구(22.6%)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가구 유형별 청년 비율

(단위: %)



자료: 국무조정실(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주: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자녀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는 '청년 가구주 가구'에 해당, '부모(가구주) 미혼청년가구', '부모(가구주)·기혼, 이혼, 별거, 사별 청년가구', '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는 '비청년 가구주 가구'에 해당

- ▶ 이러한 변화들은 연령을 기준으로 기회나 자원을 할당해 온 기존의 정책 대상 선정 방식이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애 단계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II. 청년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식하는 청년 연령의 상한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청년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사회 인식은 변화하고 있음

- ▶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상한선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³⁾
 - 2016년 조사에서 청년 연령은 19.3세에서 29.5세로 나타났고, 2021년 조사에서는 19.6세에서 32.9세로 나타났음
 - 특히 청년 연령 상한이 29.5세에서 32.9세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동년배 간 이질성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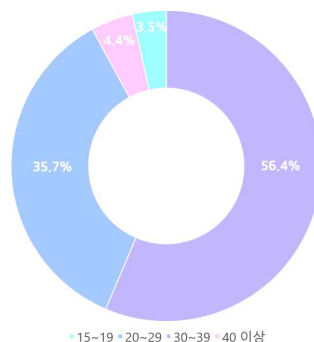
〈표 1〉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연도별 추이

구분	아동 연령		청소년 연령		청년 연령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하한(평균)	상한(평균)
2016	5.2	11.5	12.6	18.4	19.3	29.5
2017	4.5	11.2	12.2	18.4	19.4	31.2
2018	4.8	11.3	12.8	18.8	19.8	31.4
2019	4.2	10.9	12.4	18.4	19.5	32.3
2020	4.2	11.2	12.4	18.6	19.6	32.3
2021	4.3	11.1	12.5	18.5	19.6	32.9

자료: 김기현·배정희(2021)

- ▶ ‘청년’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령 상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음⁴⁾
 - 최빈값은 30세와 35세로 20.8%, 16.8%로 나타나며, 29세로 응답한 비율은 13.8%로 나타났다. 35세까지의 누적 비율은 88.5%이며, 39세까지는 95.3%로 나타났음
 - 최근 취업난이 심화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30대까지를 청년의 시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청년의 연령 상한 기준에 대한 생각



- 평균(세) : 30.8
- 표준편차 : 5.79
- 1순위 최빈값 : 30
- 2순위 최빈값 : 35

자료: 이윤경 외(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3) 김기현·배정희(2021).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이윤경(2021).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 보건복지포럼, 293(04), 39-54

II. 청년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

청년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연령은 서로 상이하며, 경기도 조례에서의 청년 연령 또한 서로 상이함

청년 관련 법률과 경기도 조례에서 청년 연령 기준은 서로 다름

-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다만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의 범위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근로 가능 연령인 15세를 기준으로 청년 연령 하한을 정하였고, 의무 고용과 같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세수 감소와 연관된 경우에는 청년 연령 상한 범위를 29세로 다소 좁게, 창업 지원 등과 같은 경우에는 39세로 더 넓게 정의하였음⁵⁾

〈표 2〉 청년 관련 법률에서 청년 연령

		10	20	30	40	50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9-34		
국무조정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5-29(34)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5-34		
국무조정실	조세특례제한법			15-29		
국무조정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9	

▶ 경기도 조례에서 나타난 청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같이 「경기도 청년 장애 세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도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와 19세로 나타났으며, 청년 연령 상한은 24세, 34세 및 39세로 나타났음
- 청년 관련 법률과 유사하게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의 경우 연령 하한이 15세로 나타났으나 이와 무관한 조례들의 연령 하한과 상한은 제각각으로 나타났음

5) 장민선·최환용·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II. 청년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의 연령 기준도 서로 상이함

〈표 3〉 경기도 조례에서 청년 연령

		10	20	30	40	50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19-39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15-39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19-34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19-34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39		
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 장애 세대균인 지원에 관한 조례			19-39		
복지사업과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34		
일자리정책과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15-29			
지역금융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19-34		
관광산업과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19-24			
예술정책과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9-39		
주택정책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19-39		
경기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15-			
벤처스타트업과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39		

경기도 사회복지제도의 청년 연령 기준은 서로 다름

- ▶ 경기도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에서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가 45.5%로 가장 많았고,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19.0%로 그다음으로 많았음
- 경기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들의 연령 하한선은 19세가 6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상한선은 39세가 5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경기도 사회복지제도 청년 연령 기준 현황

구분	15-39세	18-34세	18-39세	19-34세	19-39세	기타	합계
경기도 전체	2	4	17	23	55	20	121
수원시	-	-	1	4	3	3	11
용인시	-	-	6	1	-	2	9
고양시	-	-	1	1	1	-	3
화성시	-	-	-	1	5	-	6
성남시	-	-	-	5	1	2	8
부천시	-	-	-	1	1	-	2
남양주시	-	1	1	-	2	2	6

II. 청년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인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기존 사회복지제도들이 이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함

구분	15~39세	18~34세	18~39세	19~34세	19~39세	기타	합계
안산시	-	-	1	-	-	-	1
평택시	-	-	-	-	3	-	3
안양시	-	-	-	1	4	3	8
시흥시	-	-	-	4	-	-	4
파주시	-	1	-	-	1	-	2
김포시	1	-	-	-	-	-	1
의정부시	-	-	-	-	1	-	1
광주시	-	1	1	-	8	4	14
하남시	-	1	-	-	2	-	3
광명시	-	-	-	1	1	-	2
군포시	-	-	-	1	2	-	3
양주시	-	-	-	1	3	-	4
오산시	-	-	-	-	2	-	2
이천시	-	-	-	1	4	1	6
안성시	-	-	-	1	1	-	2
구리시	-	-	1	-	2	-	3
의왕시	-	-	-	-	3	-	3
포천시	-	-	-	-	-	2	2
양평군	-	-	3	-	-	1	4
여주시	-	-	2	-	-	-	2
동두천시	-	-	-	-	2	-	2
과천시	-	-	-	-	1	-	1
가평군	1	-	-	-	2	-	3
연천군	-	-	-	-	-	-	-

주: 청년포털(<https://www.2030.go.kr/main>)에서 검색된 청년 관련 사회복지제도들을 종합하여 표로 제시

청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 인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법률, 조례, 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 제도적 연령주의에 의해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 제도적 연령주의는 연령을 기반으로 불공평하게 기회를 제한하거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 규칙, 사회규범, 정책, 및 제도 관행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의미함⁶⁾
 - 이는 기관이나 개인 행위자들이 의식적이고 공공연하게 연령차별적 행동이나 조치를 취할 때 나타날 수 있음
- ▶ 연령주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제도의 규칙, 규범, 의례 자체가 나이에 대한 가정이나 나이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러한 배제를 정당화하며, 연령을 기반으로 한 불균형한 권력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음

6)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021). Global report on Ageism.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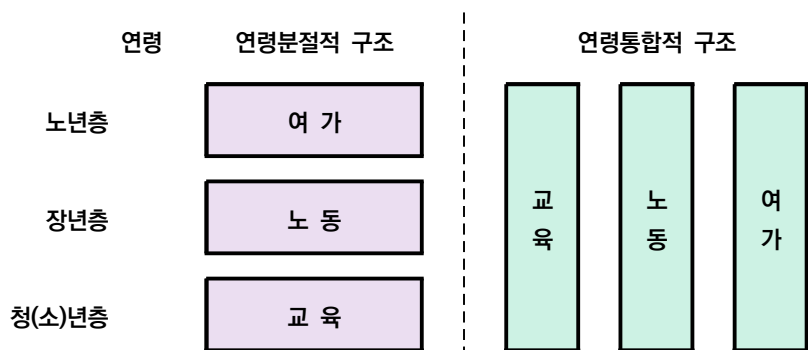
II. 청년 연령 기준 현황과 쟁점

청년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그들이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연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령통합 패러다임을 통한 청년 연령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 ▶ 연령통합(age integration)은 연령이 사회 안의 제도나 역할, 지위 등에 장벽이 되지 않으며, 여러 연령대의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함⁷⁾
 - 개인과 사회에 따라 연령의 통합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인 기회는 연령에 관계 없이 균등한 상태가 되는 사회를 의미함⁸⁾
- ▶ 표준적 생애 모델에 근거한 연령 분절 패러다임은 연령이 사회복지제도를 수급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연령 기준에 의해 제도의 경직성과 획일성을 초래할 수 있음⁹⁾
 - 특정 사회복지제도가 동일한 연령 집단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 연령통합 패러다임은 교육, 노동, 여가 등을 연령 장벽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행하는데 연령과 상관없이 유연하게 진입과 탈퇴가 가능하며 모든 연령대에 기회가 열려있는 것을 의미함¹⁰⁾
 - 연령통합의 개념은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으로 구성됨
 -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연령에 따른 특정 역할로의 진입, 퇴장, 수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 집단들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함

〈그림 4〉 연령분절적 구조와 연령통합적 구조 비교



자료: Riley & Riely, 1994; 정순돌 외, 2021:30 재인용

7) 정순돌·기지혜·최혜지(2015).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연구, 68: 161-86.
 8) Uhlenberg, P.(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61-266.
 9) 최혜지·전혜상·정순돌. (2015).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노인 연령통합의 좌표와 유용성. 사회복지정책, 42(2), 343-364.
 10) Riley, M. W., & Riley, J. W.(1994). Age integration and the lives of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34(1), 110-115.

청년은 새로운
생애단계로 고정된
연령 기준이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 제공이
필요함

연령통합 패러다임을 통한 청년 정책 재정립 필요

- ▶ 고정된 연령 기준이 아닌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모색이 필요함
 - 청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정규직 일자리, 주거 마련, 결혼, 출산 등을 통한 안정된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특징된 사회에 진입함을 의미함
 -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과정을 단순히 표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 직업 경력, 가족 구성, 사회 네트워크의 참여, 정서적 안정, 건강 등 다양한 생활적 측면으로 채워져야 함
 -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을 구축할 때에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과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함
 - 청년기를 아동기, 성인기, 노년기와 함께 고려되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인식하고, 이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을 위해 교육, 훈련, 고용, 사회활동 등 주로 청년과 관련된 제도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¹¹⁾
 - 청년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각자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결혼 및 출산 등 전통적인 생애과정의 변화로 인해 연령 상한 설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었음
 - 특히 노후소득이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한국 사회는 연령통합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고용이나 교육 등 사회적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연령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다른 진단적 기준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장학금 제도의 경우 35세(또는 45세)로 연령 상한 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자녀 양육을 마친 여성,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장년, 은퇴를 앞둔 노년층 등에게도 필요한 제도임
- ▶ 청년을 새로운 생애단계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함
 - 청년을 단순히 피동적인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은 단순한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자기 결정력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따라서 경기도의 청년 관련 조례들과 사회복지제도들도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맞춰 필요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을 확대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최선영·남궁은하·이다미·이원진·최인선(2022). 사회보장제도 연령주의 사례발굴, 한국보건사회연구원.